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·결정해야 하는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계법령 변경

-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”을 ⇒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”으로 함

○ 용자심의위원회 심의 생략

-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금액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⇒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등 수시로 지원·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”을
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”으로 한다

제12조중 “ 다만 현지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”를
“다만,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·
결정해야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제43조 및 <u>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</u>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<u>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</u>-----</p>
<p>제12조(용자대상자의 선정)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, 현지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용자대상자의 선정) ①----- ----- -----<u>다만,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·결정해야 하는 경우 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.</u>-----</p>
<p>②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자금의 설치,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

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

제3조(구조개선지원계획 등) ①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·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·기업의 합병·공동사업·사업전환·사업장의 이전·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수 있다

②~④(생략)

□ 중소기업청지시(중소기업청 소기55478-467호 '02. 12. 26)

“자금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융자심의원회 운영 원칙적으로 금지, 단 정책결정이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”로 한정